

「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 통리반을 분리·통폐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5개 통·리 및 24개 반 증설

읍면동	기 존		개 정		증감현황		조정내용
					리	반	
고아읍	문성7리	1~27반	문성7리	1~13반	-	-14	문성7리 분리
			문성8리(신설)	1~14반	+1	+14	
	문성8리	1~23반	문성12리	1~23반	-	-	리 명칭 조정 (8리→12리)
송정동	9통	1~4반	9통	1~10반	-	+6	행복주택 신축에 따른 반 증설
원평동	3통	1~8반	3통	1~11반	-	+3	아이파크 더샵 신축에 따른 통반 증설
	4통	1~8반	4통	1~10반	-	+2	
	-	-	22통(신설)	1~12반	+1	+12	
	-	-	23통(신설)	1~10반	+1	+10	
	1통	1~7반	1통	1~3반	-	-4	과소반 통·폐합
	13통	1~7반	13통	1~3반	-	-4	
선주 원남동	1통	1~6반	1통	1~4반	-	-2	24통 분리
	24통	1~7반	24통	1~4반	-	-3	
	-	-	49통(신설)	1~4반	+1	+4	
	47통	1~20반	47통	1~20반	-	-	착오기재 호수 정정
진미동	1통	1~6반	1통	1~4반	-	-2	1, 2통 분리
	2통	1~7반	27통(신설)	1~4반	+1	+4	
			2통	1~5반	-	-2	
	합 계				+5	+24	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 통리반을 분리 · 통폐합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생활권 현실에 맞게 통 · 반을 조정함으로써,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